

1. 개정이유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 및 가스 제작 자동차의 차기('26~)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 1)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함

나.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차기('26~)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설정(안 별표 19의2, 별표 19의3)

-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26년 이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2) '27년 이후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출고비율 (%)	0	0	30	30	80	80	100	100	100	100	100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6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출고비율 (%)	0	10	20	40	70	100	100	100	100	100	100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출고비율 (%)	0	10	20	40	70	100	100	100	100	100	100

별표 17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기준 1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자동차, 중형 승용·화물		1.31 g/km 이하	-	0.078 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78 g/km 이하	-	-	-	US06 모드
		1.31	-	0.078	-	-	-	SC03 모드

자동차		g/km 이하		g/km 이하				
	기준 2	1.06 g/km 이하	-	0.044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44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44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3	1.06 g/km 이하	-	0.040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40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40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4	1.06 g/km 이하	-	0.038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38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38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5	1.06 g/km 이하	-	0.034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34 g/km 이하	-	-	-	US 06 모드
		1.06 g/km 이하	-	0.034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6	1.06 g/km 이하	-	0.031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31 g/km 이하	-	-	-	US 06 모드
		1.06 g/km 이하	-	0.031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7	1.06 g/km 이하	-	0.028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28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28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8	1.06 g/km 이하	-	0.025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25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25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9	1.06 g/km 이하	-	0.022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22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22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10	1.06 g/km 이하	-	0.019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19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19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11	1.06 g/km 이하	-	0.016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19 g/km 이하	-	-	-	US06 모드
		1.06 g/km 이하	-	0.016 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12	1.06 g/km 이하	-	0.0125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19 g/km 이하	-	-	-	US06 모드
	기준 13	1.06 g/km 이하	-	0.0125 g/km 이하	-	-	-	SC03 모드
		1.06 g/km 이하	-	0.010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19 g/km 이하	-	-	-	US06 모드
	기준 14	1.06 g/km 이하	-	0.010 g/km 이하	-	-	-	SC03 모드
		1.06 g/km 이하	-	0.006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06 g/km 이하	-	-	-	US06 모드
	기준 15	1.06 g/km 이하	-	0.006 g/km 이하	-	-	-	SC03 모드
		1.06 g/km 이하	-	0.003 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 g/km 이하	-	0.003 g/km 이하	-	-	-	US06 모드
	기준 16	0 g/km	-	0 g/km	0g/1 주행	-	0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4.0g/kWh 이하	0.40g/ kWh 이하	0.14g/kWh 이하	0g/1 주행	-	-	WH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4.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은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와 질소산화물을 합한 값으로 측정한다.
5.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6.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가스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g/km 이하로 한다.

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7.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8. 기준 1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이 별표 제1항을 적용하여 인증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출고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사의 경우에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9.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 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0.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예비주행 후 부분주차 시간(Partial Soak 조건)에 대하여 CVS-75 모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종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10분	40분	3-12시간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기준 1	0.040g/km 이하	0.060g/km 이하	0.078g/km 이하
	기준 2	0.022g/km 이하	0.034g/km 이하	0.044g/km 이하
	기준 3	0.021g/km 이하	0.031g/km 이하	0.040g/km 이하
	기준 4	0.019g/km 이하	0.029g/km 이하	0.038g/km 이하
	기준 5	0.018g/km 이하	0.026g/km 이하	0.034g/km 이하
	기준 6	0.016g/km 이하	0.024g/km 이하	0.031g/km 이하
	기준 7	0.015g/km 이하	0.022g/km 이하	0.028g/km 이하
	기준 8	0.0125g/km 이하	0.020g/km 이하	0.025g/km 이하
	기준 9	0.012g/km 이하	0.017g/km 이하	0.022g/km 이하
	기준 10	0.010g/km 이하	0.015g/km 이하	0.019g/km 이하
	기준 11	0.009g/km 이하	0.012g/km 이하	0.016g/km 이하
	기준 12	0.006g/km 이하	0.010g/km 이하	0.0125g/km 이하
	기준 13	0.005g/km 이하	0.008g/km 이하	0.010g/km 이하
	기준 14	0.003g/km 이하	0.005g/km 이하	0.006g/km 이하
	기준 15	0.002g/km 이하	0.003g/km 이하	0.003g/km 이하

11. 제10호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제38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의 해당 연도 출고비율은 0% 이상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출고비율	0% 이상	20% 이상	40% 이상	60%	100%

12. 제1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연차별 출고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2026\text{년 출고비율}) \times 4 + (2027\text{년 출고비율}) \times 3 + (2028\text{년 출고비율}) \times 2 + (2029\text{년 출고비율}) \times 1 \geq 200(\%)$
- 2) $(2030\text{년 이후 출고비율}) = 100(\%)$

13.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는 8초의 공회전 시간(Quick Drive-Away 조건)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종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기준 1	0.078g/km 이하
	기준 2	0.051g/km 이하
	기준 3	0.048g/km 이하
	기준 4	0.045g/km 이하
	기준 5	0.042g/km 이하
	기준 6	0.039g/km 이하
	기준 7	0.035g/km 이하
	기준 8	0.033g/km 이하
	기준 9	0.030g/km 이하
	기준 10	0.027g/km 이하
	기준 11	0.023g/km 이하
	기준 12	0.020g/km 이하
	기준 13	0.017g/km 이하
	기준 14	0.014g/km 이하
	기준 15	0.011g/km 이하

다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1) CVS-75 모드에서 최초 20초 동안 엔진 시동을 하지 않는 자동차
- 2) CVS-75 모드에서 최초 505초 동안 전기적으로 촉매를 가열하는 등의 배출량 증가를 유발하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14. 제13호의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의 8초 공회전 시간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제13호 본문 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15. 제13호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제38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의 해당 연도 출고비율은 0% 이상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출고비율	0% 이상	20% 이상	40% 이상	60%	100%

16.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연차별 출고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2026년\ 출고비율) \times 4 + (2027년\ 출고비율) \times 3 + (2028년\ 출고비율) \times 2 + (2029년\ 출고비율) \times 1 \geq 200(\%)$$

$$2) (2030년\ 이후\ 출고비율) = 100(\%)$$

17. 위 표의 US06, SC03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1)의 표와 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제38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출고비율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의 인증기준별 US06, SC03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2)의 표와 같이(제38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은 자동차는 아목의 기준 이하) 적용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의 해당 연도 출고비율은 0% 이상으로 적용한다.

1) US06, SC03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연도별 출고비율

적용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출고비율	0% 이상	20% 이상	40% 이상	60%	100%

2) 출고비율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기준	US06	SC03
기준 1~9	0.075g/km 이하	0.044g/km 이하
기준 10~15	0.031g/km 이하	0.012g/km 이하

18. 제17호에 따라 위 표의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의 US06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위 표의 US06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

산화물 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19. 제1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연차별 출고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2026년 출고비율) \times 4 + (2027년 출고비율) \times 3 + (2028년 출고비율) \times 2 + (2029년 출고비율) \times 1 \geq 200(\%)$$

$$2) (2030년 이후 출고비율) = 100(\%)$$

20.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Highway) 주행모드의 배출허용기준은 CVS-75 모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 이하로 한다.

21.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 4를 적용하고, CVS-75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7mg/km 이하로 한다.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경우 CVS-75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mg/km 이하로 한다.

2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000g/km와 0g/테스트를 적용한다.

23.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CVS-75 모드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7mg/km 이하로 한다. 다만,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 중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적용하는 CVS-75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1.3mg/km 이하로 한다.

24. 제23호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제38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출고비율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는 CVS-75 모드의 입자상물질이 2mg/k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의 해당 연도 출고비율은 0% 이상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출고비율	0% 이상	20% 이상	40% 이상	60%	100%

25. 제2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연차별 출고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2026년까지의 출고비율) \times 4 + (2027년 출고비율) \times 3 + (2028년 출고비율) \times 2 + (2029년 출고비율) \times 1 \geq 200(\%)$$

$$2) (2030년 이후 출고비율) = 100(\%)$$

26.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US06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mg/km 이하로 한다. 다만, 본문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 중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적용하는 US06 모드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5mg/km 이하로 한다.

27. 제26호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제38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출고비율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는 US06 모드의 입자상물질이 6mg/k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사의 경우 2031년까지의 해당 연도 출고비율은 0% 이상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이후
출고비율	0% 이상	0% 이상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100%

28. 제2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연차별 출고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2028\text{년 출고비율}) \times 4 + (2029\text{년 출고비율}) \times 3 + (2030\text{년 출고비율}) \times 2 + (2031\text{년 출고비율}) \times 1 \geq 500(\%)$
- 2) $(2032\text{년 이후 출고비율}) = 100(\%)$

29. 증발가스 시험을 위한 세부 연료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30. 위 표 증발가스 기준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2.7톤 이하의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5g/테스트를, 그리고 총중량 2.7톤 초과인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75g/테스트의 기준을 적용한다.

31.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에 속하는 자동차 외부에서 충전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이하 이 비고에서 PHEV라 한다)의 냉간 시동 US06 모드 배터리 방전상태 시험 결과는 다음 표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종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2026-2029년	2030년 이후
경자동차, 소형	기준 1	0.218g/km 이하	0.156g/km 이하
	기준 2	0.199g/km 이하	0.125g/km 이하
	기준 3	0.186g/km 이하	0.117g/km 이하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기준 4	0.174g/km 이하	0.109g/km 이하
	기준 5	0.162g/km 이하	0.102g/km 이하
	기준 6	0.150g/km 이하	0.094g/km 이하
	기준 7	0.137g/km 이하	0.086g/km 이하

기준 8	0.125g/km 이하	0.078g/km 이하
기준 9	0.109g/km 이하	0.071g/km 이하
기준 10	0.094g/km 이하	0.063g/km 이하
기준 11	0.078g/km 이하	0.052g/km 이하
기준 12	0.063g/km 이하	0.042g/km 이하
기준 13	0.047g/km 이하	0.032g/km 이하
기준 14	0.031g/km 이하	0.022g/km 이하
기준 15	0.016g/km 이하	0.011g/km 이하

다만, 다음의 1) 또는 2)를 만족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US06 모드 배터리 방전상태 시험을 하지 않는다.

1)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 중 US06 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AER)가 16km 이상인 자동차

2) 203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중 US06 모드 전기동력주행거리(AER)가 64km 이상인 자동차

32. 제31호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202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제38호에 따라 아목의 기준을 적용받아 출고되는 자동차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평균 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2031년까지의 해당 연도 출고비율은 0% 이상을 적용한다.

1) 3종류 이상의 PHEV를 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

적용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출고비율	0% 이상	20% 이상	40% 이상	60%	100%

2) 1~2종류의 PHEV를 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

적용기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출고비율	0% 이상	0% 이상	40% 이상	60%	100%

33. 제3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1)과 3)을 만족하거나 2)와 3)을 만족하는 연차별 출고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3종류 이상의 PHEV를 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

$$(2026년 출고비율) \times 4 + (2027년 출고비율) \times 3 + (2028년 출고비율) \times 2 + (2029년 출고비율) \times 1 \geq 200(\%)$$

2) 1~2종류의 PHEV를 판매하는 자동차제작자

$$(2027\text{년 출고비율}) \times 3 + (2028\text{년 출고비율}) \times 2 + (2029\text{년 출고비율}) \times 1 \geq 140(\%)$$

3) (2030년 이후 출고비율) = 100(%)

34. 위 11, 15, 17, 24, 27, 3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9의2 제3호다목 3)의 ‘나’ 일정을 선택한 자동차제작자는 2.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해당연도의 출고비율 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35. 자동차 총중량 4.6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자동차는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36.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2017년 1월 1일 이후	6.0g/kW·h	0.6g/kW·h	0.96g/kW·h	환경부장관이 고시

37.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하되,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측정항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메탄	측정방법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6.0g/kW·h	0.6g/kW·h	0.21g/kW·h	0.75g/kW·h	환경부장관이 고시
THC를 측정하는 경우	6.0g/kW·h	0.6g/kW·h	0.75g/kW·h	-	

38.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9의2 제3호나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63 g/km 이하	0.058 g/km 이하	0.053 g/km 이하	0.048 g/km 이하	0.043 g/km 이하	0.039 g/km 이하	0.034 g/km 이하	0.029 g/km 이하	0.024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19 g/km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0.074 g/km	0.068 g/km	0.062 g/km	0.056 g/km	0.050 g/km	0.043 g/km	0.037 g/km	0.031 g/km	0.025 g/km	0.019 g/km	0.019 g/km

중형화물차, 중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	----	----	----	----	----	----	----

별표 19의2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7년 1월 1일 이후

- 1) 자동차제작자는 별표 19의3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연도별로 0.019g/k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 2) 위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는 별표 19의3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연도별로 0.032g/k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 3) 위 1)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7톤 이상의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가’ 혹은 ‘나’ 란의 수치 중 한 가지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32년까지 선택한 일정을 연속적으로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 혹은 ‘나’ 란의 수치 중 한 가지 일정을 선택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목		연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2.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16g/km이하	0.015g/km 이하	0.013g/km 이하	0.012g/km 이하	0.011g/km 이하	0.010g/km 이하
2.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가	0.016g/km이하	0.015g/km 이하	0.013g/km 이하	0.012g/km 이하	0.011g/km 이하	0.010g/km 이하
	나	0.019g/km이하	0.019g/km 이하	0.019g/km 이하	0.010g/km 이하	0.010g/km 이하	0.010g/km 이하

- 4) 자동차제작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17 제1호아목 비고 제25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인증받은 자동차 중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0.031g/k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19의3 제1호에 가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7년 1월 1일 이후

$$\left[\sum(\text{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times \text{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 + \sum(\text{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times \text{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 \right] \div \text{전체출고량}$$

비고

가) 자동차제작자가 24만km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에 3mg/km를 빼서 적용한다.

나) 위 식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의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의미하며,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적용된 기준값에서 조정하여 적용하되 세부적인 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및 나)에 따라 조정한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각 연도별로 다음의 최대 포함 비율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최대 포함 비율
2025년	전체 출고량의 100%
2026년	전체 출고량의 100%
2027년	전체 출고량의 60%
2028년	전체 출고량의 30%
2029년	전체 출고량의 15%
2030년 이후	전체 출고량의 0%

라)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9의2 제3호다목 3)의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한 자동차제작자 및 연간 전체출고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및 나)에 따라 조정한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마)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별표 19의3 제1호에 나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연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 전체 출고량

비고

가)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별표19의2 다의 3) 기준을 선택한 경우는 차이분 및 초과분 산정 시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2.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과 2.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

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별표 17 제1호 아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차이분 및 초과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

별표 19의3 제2호에 가목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17 제1호아목 비고 제25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인증받은 자동차 중 2028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평균 배출량은 산정하되, 이 호에 따른 합산모드 평균 배출량은 산정하지 않는다.

별표 19의3 제2호에 나목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가)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별표 17 제1호 아목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2027년 12월 31일 이후 잔여 차이분 및 초과분은 2028년 1월 1일 이후 CVS-75 평균배출량 차이분 및 초과분에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과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1. 총괄 현황

적용 대상	구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기준 5	기준 6	기준 7	기준 8	기준 9	기준 10	기준 11	기준 12	기준 13	기준 14	기준 15	기준 16	배출값 적용 PHEV	24만km 보증	판매량× 기준값 총계	당해년도 출고량 (대)	당해년도 평균실적	평균배출량 기준	
CVS-75 모드	판매량 (대)																							
	기준값 (g/km)																							
	판매량 × 기준값																							

*배출값 적용 PHEV 란에는 기준값 대신 배출값을 적용한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에 대해 작성

*기준값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및 그 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준1부터 기준16 중 해당 기준에 포함

*별표 17 제1호자목 비고 38을 적용한 자동차는 별표 17 제1호아목의 기준과 기준값이 동일한 별표 17 제1호자목 기준에 포함

(예시: 2025년까지 아목 기준3으로 인증받고 2026년에 출고한 자동차는 2026년 실적 보고서 작성 시 기준2에 포함)

*합산모드 평균배출허용기준 선택 차종에 대한 CVS-75 모드 평균 배출량 실적은 위 표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합산모드 평균 배출량 실적은 아래 서식에 작성

적용대상	구분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판매량× 기준값 총계	당해년도 출고량(대)	당해년도 평균실적	평균배출량 기준
합산모드 평균배출허용기준 선택 차종	판매량(대)											
	기준값 (g/km)											
	판매량× 기준값											

2. 세부 내역

적용 대상	배출가스 인증번호	차량명	차종	연료종류	적용기준		출고대수
					기준명칭	기준값 (g/km)	

*기준명칭에는 기준1부터 기준16 중 해당하는 기준 기입, 기준값 대신 배출값을 적용한 PHEV는 해당하는 기준(배출값)이라고 기입(예시: 기준8(배출값))

*별표 17 제1호자목 비고 38에 따라 별표 17 제1호아목으로 인증받은 자동차는 기준명칭에 자목의 기준과 함께 아목의 기준도 명시(예시: 기준2(아목 기준3))

*기준값 대신 배출값을 적용한 PHEV는 연료종류 란에 '휘발유-하이브리드' 등으로 기입하고 기준값 란에 배출값 수치를 기입

*기준값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종류 란에 '휘발유-하이브리드' 등으로 기입하고 기준값 란에 기준값 수치를 기입

210mm×297mm[보존용지 70g/㎡]

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

○ 제작사명 :

○ 실적

적용대상	배기관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g/km)					출고량(대)
	①기준	②실적	③차이분 및 초과분	④상환분	⑤이월분	
CVS-75 모드						
합산모드						

* ③ = ① - ② = ④ + ⑤

* ④는 ③ 중에서 직전 3개년도의 초과분(-값)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값[③이 차이분(+값)인 경우] 또는 직전 3개년도의 차이분(+값)으로 상환된 값[③이 초과분(-값)인 경우]

* ⑤는 ③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값

* ⑤가 '0' 보다 큰 경우에는 제71조의3제2항에 따른 상환명령 대상에서 제외함

* 2028년부터는 합산모드 작성 안함

위와 같이 년도 평균 배출량 실적(이월/상환)을 확인함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